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 KOSCA LETTER



2023 Vol.36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영역은 커져 시민들의 이야기 KOSCA LETTER 2023 Vol.36

부산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의 미학

기장 바다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입체적인 구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표지이야기 카페코랄라니  
(2022 부산다운 건축상 장려 수상작)

##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LETTER Vol.36

발행인 |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 [kosca21@kosca.or.kr](mailto: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 CCA (051. 647. 5991)  
사진제공 | CCA





## 지역 균형 발전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진 현 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현환입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전문건설 분야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할 구역이 영남지역 5개 광역시·도에 걸쳐 있어 전 국토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며,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과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영남권 발전의 선두주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영남지역의 국도 연장은 3,110km에서 4,284km로 늘어났으며 안전·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기반인 산업단지, 항만, 물류 유통, 관광 수요 등과 연계하여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및 장비강요, 금품요구 등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내에 별도의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부산의 전문건설인과 함께 부산이 2030 엑스포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연계 도로망 구축,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지역 혁신 성장 및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가상승 및 각종 파업으로 인한 건설 환경 악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총생산(GRDP) 순위는 전국 17개시·도 중 6위이며, 1인당 GRDP는 15위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부산지역 GRDP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서울보다 높고, 부·울·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건설산업의 비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지표 중 대표적 동행 지표인 건설투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 건설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육성 및 첨단산업의 교두보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과 부산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금년도 보상추진 및 상반기 GB해제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며, 4월에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설계 공모 및 에코델타시티 11,12,24BL 공동주택 3,791세대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에코 11,12,24BL 공동주택의 경우 3개 블록 동시 발주 및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40%로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 대비 스마트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BOOK모닝」 및 공공건설산업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규제 등의 개선을 위한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건설부분 미래 혁신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노력 등 ESG경영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핵심 성장동력 부재, 인구·일자리감소 및 산업구조 노후화 등 다가오는 현실은 지역건설산업을 장기침체 늪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과 도전정신을 가진 전문건설인 여러분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공사 또한 지역 건설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항상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회의 및 행사

### 01 2023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10일(10:30 / 서면 이리스웨딩홀&뷔페 14층 회의실) 회장단과 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과 2023년도 이웃돕기성금모금 일정,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일정 등을 보고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38회 정기총회 개최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 02 2023년 신년인사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10일(11:30 / 서면 이리스웨딩뷔페홀&뷔페 14층 골드룸) 서병수 국회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임원 및 대표회원, 부산광역시 건설관계관, 협회 자문단(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주요 성과를 설명하면서 “2023년은 건설산업이 상호시장 개방 전면허용을 앞두고 변화와 혼란 속에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내실을 다지고 우리의 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전문건설업계가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신년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협회와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떡케익 커팅식을 가졌다.



**03 2023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월 18일 (11:00 / 부산전문건설협회 4층 회의실) 운영위원 19명,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회의록과 업종별 등록현황, 준예산 편성·집행, 2023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일정 및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결정, 제38회 정기총회 개최일자 및 부의사항 의결, 중앙회 제38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추인), 제38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선정, 부산광역시교육감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2023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을 결정하는 등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 부의안을 심의했다.



**04 제38회 정기총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2월 2일(11:00 /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중앙회 윤학수 회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하운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 내빈 200여명과 부산시회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 내빈초청 행사에서는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해 협회 중앙회 회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부산광역시장상(자랑스러운 건설인상), 부산시교육감상, 협회 부산시회장상 등의 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김세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숙원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은 어려운 부산경제와 전문건설업계에 희망”이라며 “우리시회는 중앙회와 함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재검토 등 업계의 주요 현안사항과 회원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부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유공회원사 포상대상자 명단

국토부장관 포상

국토부장관 표창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주)덕재건설 대표이사 김운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상

회원사 공로상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민성건설(주) 대표이사 서영철

부산광역시 2022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부산광역시장상)

우수건설업체					우수건설기술인	
						
한일금속 대표 주병규	서연건설(주) 대표이사 황경숙	섬진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열	(주)테크유니온 대표이사 신유정	(주)아랑존디 대표이사 우범용	(주)동아피앤씨 대표이사 홍종욱	신동건설(주) 대표이사 정길찬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표창장

		
(주)보광 대표이사 윤영갑	(주)청복건설 대표이사 정귀자	(주)신아건설 대표이사 윤정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상

회원사 공로패 ※ 연장자순

			
(주)삼신퍼스틸 대표이사 임호성	동경개발건설(주) 대표이사 김미옥	대한기술개발(주) 대표이사 신미욱	(주)용마루건설 대표이사 문헌철

회원사 공로패

※ 연장자순

					
(주)이레패널 대표이사 김진태	(주)다인산업개발 대표이사 황재용	오현조경개발(주) 대표이사 하영민	(주)다인산업개발 대표이사 박미란	알앤비엔씨(주) 대표이사 김현호	(주)이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송상미



**05 2023년 이웃돕기성금 고액기부 회원사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9일(12:00 / 포항회집 2층 회의실)「2023년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 회원사 대표 23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과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사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하여, 총 151개사 5,138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성금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모금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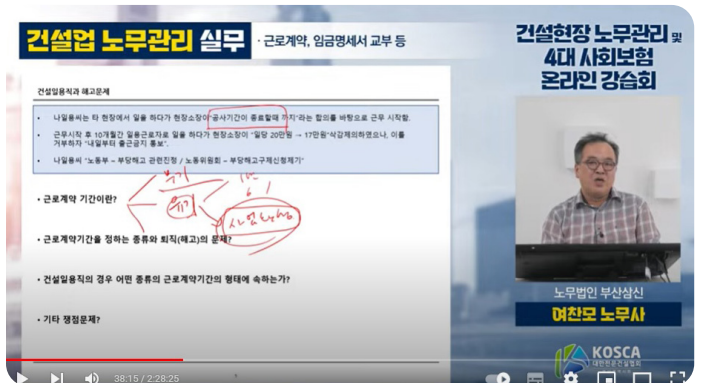


**06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강습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10일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유튜브 생방송)으로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강습회」를 실시했다.

이날 온라인 교육에서는 부산사회 자문노무사(노무법인 부산삼신 여찬모 노무사)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등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에 대해, (주)제이엔제이경영상담(조수호 대표)에서 확정 및 개산보험료 신고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부산사회는 회원사에서 언제든지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부산사회 유튜브채널(KOSCA부산)에 강의영상을 게재했다.



**07 2023회계연도 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22일(11:00 / 서면 이리스웨딩홀&뷔페 14층) 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전문·종합의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영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분과별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접수 현황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문건설업 단독 발주 추진 등 회원사 건설공사 수주지원 추진현황 및 부산사회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01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1월 12일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건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 침체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하도급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계도하여 줄 것”과 “건설사를 압박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 노동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태휘 소장은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하도급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로 전문건설업체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건설장비 임대 가격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건설노조의 불법노동행위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02 설 명절대비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한 현장방문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부산시 하도급 관리팀과 합동으로 장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지역 내 대형건설 현장 5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사회는 지역업체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및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각 현장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공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동정

01 부산시회장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KNN 인터뷰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등록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3월 7일 부산경남 대표 방송사인 KNN 방송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희망이 걸려있음을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 캠페인에 동참했다.

4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50만 4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이번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생산체계 개편 등으로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부산전문건설업계의 경기 회복은 물론 건설산업 활성화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치 확정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등록엑스포)」는 엑스포 참가국의 국가관 건설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수주를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엑스포 참여라는 경험과 세계적인 명성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NN 뉴스홈 분야별 부산경남 기획뉴스 특집 인물포커스 캐내네 뉴스 다시보기 로그인 시청자 제보 은에어

경제

# 엑스포 유치되면 지역건설 수혜 1순위



## 사회공헌활동

### 01 2023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부산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1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총 5,138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모금된 성금은 부산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연탄지원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 2023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 회원사 명단

(고액, 상호순)

(단위 :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3,000,000
2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2,500,000
3	(주)삼성도장	이관옥	2,000,000
4	(주)신아건업	윤정필	2,000,000
5	(주)제일공사	박수근	2,000,000
6	(주)홍산건설산업	강용호, 강재원	1,100,000
7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1,000,000
8	건진개발(주)	심수울	1,000,000
9	(주)보광	윤영갑	1,000,000
10	거북건설(주)	이주상	1,000,000
11	신우개발	김문곤	1,000,000
12	(주)청복건설	정귀자	1,000,000
13	(주)다인산업개발	박미란	1,000,000
14	(주)덕재건설	김운석	1,000,000
15	(주)천진	심재복	1,000,000
16	(주)테크유니온	신유정	1,000,000
17	(주)한수유니텍	손영규	1,000,000
18	대한기술개발(주)	신미옥	1,000,000
19	삼지건설(주)	이태원, 이효정	1,000,000
20	새벽건설(주)	김정수	1,000,000
21	서연건설(주)	황경숙	1,000,000
22	야후건설(주)	김병흠	1,000,000
23	태영토건(주)	진성희	1,000,000
24	옥상건설(주)	박동호	500,000
25	(주)거도산업	김도윤	500,000
26	(주)금강고려하우징	권동근	500,000
27	(주)보문하우징	김채용	500,000
28	(주)보성건설	변기홍	500,000
29	(주)삼신퍼스틸	임호성	500,000
30	(주)서우산업	이준희	500,000
31	(주)태웅이앤씨	권태웅	500,000
32	대명토건(주)	강진구	500,000
33	세고엔텍	김윤완	5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34	영빈건설(주)	김재진, 이준우	500,000
35	천지개발(주)	임철규	500,000
36	홍산건설(주)	신상기	500,000
37	(주)보륜건설	이미애	300,000
38	(주)봉조건설	조흥제	300,000
39	(주)공간조경	정석봉	300,000
40	(주)금광개발	김진영	300,000
41	(주)대양산업건설	오종출, 김진형	300,000
42	(주)신홍산업	강신모	300,000
43	(주)창성공영	안병호	300,000
44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300,000
45	(주)흥림건설	강갑균	300,000
46	거보건설(주)	정영만	300,000
47	국제건업(주)	권재규	300,000
48	금탑건설(주)	이종범	300,000
49	녹화조경(주)	김점식	300,000
50	신신이앤지(주)	고정자	300,000
51	신평건설(주)	정길찬	300,000
52	예인건설(주)	허성규	300,000
53	재은건설(주)	박남이	300,000
54	태영건업(주)	박판용	300,000
55	(주)서한기업	서쌍철	250,000
56	(주)금정토건	문준식	200,000
57	(주)금평산업개발	엄경섭	200,000
58	(주)비엠	배미애	200,000
59	(주)연동	반백철	200,000
60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200,000
61	다풍건설(주)	태상덕	200,000
62	대성엔지니어링	조복기	200,000
63	동경개발건설(주)	김미옥	200,000
64	명작건설(주)	박정구	200,000
65	민성건설(주)	서영철	200,000
66	석봉건설(주)	한상호	2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67	일강건설(주)	정종택	200,000
68	한림정공(주)	강정민, 김상철	200,000
69	한일금속	주병규	200,000
70	해진건설(주)	이상호	200,000
71	효원산업	김서연	200,000
72	(주)건양산업	정종원	100,000
73	(주)광토건설	백성호	100,000
74	(주)금광환경	김형준	100,000
75	(주)다동건설	김동환	100,000
76	(주)다용건설	박상용	100,000
77	(주)대왕석재	양정식	100,000
78	(주)대웅시설안전	성선경	100,000
79	(주)대정이앤씨	주철호	100,000
80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100,000
81	(주)동영에스씨	방성원	100,000
82	(주)디엠플랜	박형용	100,000
83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탁규오	100,000
84	(주)부근건설	신중근	100,000
85	(주)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서상복	100,000
86	(주)부산산업	김성도	100,000
87	(주)빅인테리어	김상열	100,000
88	(주)삼강기업	정은재	100,000
89	(주)성심	유미애	100,000
90	(주)원태건설	지미선	100,000
91	(주)은성이앤씨	김기태	100,000
92	(주)일진아이앤씨	강병식	100,000
93	(주)젠플랜	심수덕	100,000
94	(주)제일협성	박정민	100,000
95	(주)중앙제이에스케이건설	남기용	100,000
96	(주)태은건설	양현숙	100,000
97	(주)태현이엔지	박영철	100,000
98	(주)한일개발	이종철	100,000
99	(주)헤렌드건설	석희명	100,000
100	(주)호승원스피아	김찬복	100,000
101	(주)화성건설	변용규	100,000
102	가양건설(주)	김기량	100,000
103	고려토건(주)	이미영	100,000
104	남우산업개발(주)	황규진	100,000
105	대산건설	신현상	100,000
106	대성산업종합환경	박쌍윤	100,000
107	동남창호(주)	나기주	100,000
108	동우기업	최원용	100,000
109	상화건설(주)	정인호	100,000
110	서연개발(주)	박세웅	1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11	선우토건(주)	강준구	100,000
112	신창건영(주)	노현숙	100,000
113	에스엔케이건설(주)	김장우	100,000
114	원원건설	전형문	100,000
115	윤슬건설(주)	박언희	100,000
116	진우공사	정진석	100,000
117	하나해상개발(주)	임창수	100,000
118	한국라이텍개발(주)	황성도	100,000
119	해송이앤씨(주)	박인경	100,000
120	화성기업(주)	노대환	80,000
121	(주)국일에스에프건설	이기덕	50,000
122	(주)국토건영	차수열	50,000
123	(주)금아건설	이군범	50,000
124	(주)남도말물	김세동	50,000
125	(주)대명에스씨아이	정한영	50,000
126	(주)대오건설산업	신봉기	50,000
127	(주)더난건설	홍봉준	50,000
128	(주)동명도장	안형필	50,000
129	(주)벽성기업	김정옥	50,000
130	(주)보영	허창욱	50,000
131	(주)성진이노테크	육성진	50,000
132	(주)신성굴착	김대섭	50,000
133	(주)에스디알공간건축	서영준	50,000
134	(주)영주	정태환	50,000
135	(주)영진종합토건	박기석	90,000
136	(주)우림조경개발	박미애	50,000
137	(주)이화종합건설	이성재	50,000
138	(주)청호이앤지	손승욱	50,000
139	(주)한하산업	김정실	50,000
140	경신산업개발(주)	정순덕	50,000
141	광민건설(주)	최형선	50,000
142	두원개발(주)	김평덕	50,000
143	부강개발(주)	고찬석	50,000
144	선재토건(주)	윤상부	50,000
145	설원건설(주)	박정두	50,000
146	성우이엔지(주)	김도우	50,000
147	센텀엘앤씨(주)	임성원	50,000
148	수영석재산업(주)	문기찬, 이정훈	50,000
149	에이치원건설(주)	김철훈	50,000
150	토림조경건설(주)	조욱자	50,000
151	현복엔지니어링	김양완	50,000
<b>합 계</b>			<b>51,380,000</b>

**수주지원**

**01 2023년도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는 건설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합공사를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토록 확대·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적용이 힘들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2022년도 부산지역에서는 53건의 건설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었으며, 적정공사비 확보와 다단계 하도급 방지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1월 3일, 2월 22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2023년도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02 화장실 개·보수 및 실내 리모델링 공사 등 발주시 업역준수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등 1,069곳에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1월 3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등에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교사,강당 등 보수공사, 리모델링 등)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발주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은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보수·보강공사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석공사, 도장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 단일 공종의 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에 해당함)를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회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발주하는 교사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03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협조**

‘21. 1. 1부터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바뀌어 발주되거나 소규모 전문공사에 이르기까지 종합업체의 무차별적인 진입이 허용되는 등 불공정한 현실 속에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이 날로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과 함께 종합건설사업자가 상호진출을 통해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에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 11. 15. ~ ‘21. 12. 20.)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1/3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외형적으로는 적법한 하도급을 가장하고 84%까지 하도급을 준 경우까지 적발된 바 있다.

이렇듯 직접시공을 약속하고 전문공사에 참여한 종합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 공사를 일삼고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문공사라 할지라도 발주자가 시공품질 확보 등을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잇따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4일 부산광역시 주요 발주기관에 위장 직영 시공,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의 사회적 문제점 근절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연간단가공사에 대한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로서의 제한발주 협조 등 회원사 일감확보를 위해 16개 구·군청 발주부서 및 재무과를 순회 방문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실태를 알리고 조력을 구하였다.

**04 건축공사 착공 등 건설공사 정보 제공에 따른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으로부터 건설공사 착공정보를 전달받아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및 회원사의 대표 E-mail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사 발주계획 및 입찰정보,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등 건설공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회 홈페이지 정보 제공 현황**

- 부산광역시 등 주요 발주기관 공공공사 발주계획 현황
- 공동주택 등 입찰정보 현황
- 건설공사 착공정보 현황(각 구·군청별 세부현황)
-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현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건설공사 입찰정보 적극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1월 11일 회원사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건설공사 입찰정보 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무영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모니터링 하며 일률적·관행적으로 종합건설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잘못 발주된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정정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입찰공고의 경우 정부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입찰과 달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지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가 타 지역 공동주택 발주공사에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부산과 인접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 타 지역 공동주택 공사에도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공동주택 발주 건설공사 입찰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http://www.k-apt.go.kr)) → 입찰정보 → 전국 입찰공고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하다.

**06 공동주택 건설공사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부산시회는 1월 11일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1,108 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건설공사 발주시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건설공사의 입찰정보를 안내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 보유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에 해당되는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시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일률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를 지양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무영역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를 협조 요청했다.

07

**「괴정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1월 18일 「괴정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수도권 건설대기업들이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함에 따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으로 부산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수주 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부산지역 생산 자재 구매와 지역장비 우선임차, 부산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08

**굴착복구 등 연간단가공사에 대한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 제한 발주 협조**

부산시회는 1월 18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및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의 연간 단가공사 발주시, 전문과 종합의 상호진출이 허용된 2억 이상의 공사라 할지라도 전문공사 단독으로 발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차선 도색공사 등의 연간단가 공사인 경우, 1건 단위 공사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경험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 유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이라도 현장여건, 기술능력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실제 전국적으로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자격이 제한되어 발주되는 많은 사례들을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위장직영과 같은 불법 하도급의 근절, 신속한 유지보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9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시회는 1월 27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부산광역시에 추천했으며, 대형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10

**연간 조경유지관리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 협조 요청**

연간 조경유지보수공사는 전정, 제초, 수목시비 등 단순공종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시기에 따라 다수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기적인 작업을 반복 진행하는 공사이다.

이러한 조경유지보수공사는 실시공을 전담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줄곧 수행해 왔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의 전문공사가 상호진출 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 조경공사업체가 도급받아 직접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의 경우 연간 조경유지관리공사를 전문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간 조경유지관리공사를 전문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로만 제한하여 발주하는 것은 위장직영 등 각종 불법 하도급 근절은 물론,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자가 직접시공해야 재해 등 각종 긴급 상황 발생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유지보수, 철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30일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 연간 조경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재량과 발주부서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사업자로의 제한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11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의 2023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2월 1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2023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고
1	부산광역시	20 건	25,022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358 건	532,579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60 건	8,164	
4	부산광역시 구·군청	797 건	514,766	
5	부산 공기업(공사, 공단 등)	363 건	121,715	
6	중앙 공기업(공사, 공단 등)	136 건	444,832	
7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04 건	533,781	
8	출자·출연기관	56 건	22,963	
계		2,394 건	2,203,822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알림판 또는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2023년도 발주예정 건설공사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협조**

‘21. 1. 1부터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바뀌어 발주되거나 소규모 전문공사에 이르기까지 종합업체의 무차별적인 진입이 허용되는 등 불공정한 현실 속에 영세 전문건설업체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대시장 진출시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과 함께 종합건설사업자가 상호진출을 통해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에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 11. 15. ~ ‘21. 12. 20.)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1/3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주었으며,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을 가장하고 84%까지 하도급을 준 경우까지 적발되었다.

보다 못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3.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라 할지라도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발주기관에서도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2월 6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본부, 공사, 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에는 위장 직영 시공,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의 사회적 문제 근절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13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강화 협조**

**발주자,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에게도 통보 철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도 강화해야**

부산시회는 2월 22일 부산지역 120여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통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6,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조정되었을 경우 하수급에게도 같은 비율만큼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설계변경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해 열람을 직접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에게는 설계변경 없이 ‘선시공 후결재’라는 명분의 구두 작업지시 등을 통해 시공을 강요하고 있으며, 시공 후에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수급인이 설계변경 받은 비율만큼 하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하수급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건의한 것이다.

더불어 수급인이 대가 청구시 첨부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사전에 예방, 하도급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14

**「센텀 웨이브시티 재개발사업」  
부산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3월 7일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센텀 웨이브시티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삼미디앤씨를 방문하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등록 및 공사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했다.

센텀 웨이브시티는 일본 후쿠오카의 캐널시티를 벤치마킹한 문화, 쇼핑, 공연 기능이 모인 인프라 시설로, 규모가 부산 엘시티의 2배에 달하는 만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위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5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직접시공 근절 추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2006. 12. 04.)에서는 2009년부터 7,000㎡ 이상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자체 시공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3월 15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의결사항의 준수뿐만 아니라 직접시공 규모를 지속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만이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16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시·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3월 23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 △부산광역시 소재 6개 대학교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시장에서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설업 무등록시공 행위 근절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1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률안 내용

-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안 제98조 제2항)

■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산시회 의견

-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 반대
  - 이유: 건설기술인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보유한 기술능력 및 경력을 거짓으로 속이고 고용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건설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존 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경영애로를 우려

0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영역 개선 추진

부산시회는 3월 15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과제안건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영역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상하수도관로 세척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건설공사 예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법 제정(2021. 7. 21.) 이후 기존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로 세척공사 발주시 기존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동시 보유자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업무영역임에도 별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요하는 심각한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업무영역에서 상수도관망의 세척공사, 누수 복구 공사를 제외토록 수도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추진단에서는 「2023년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부처(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건의할 예정이다.

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3월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률안 내용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35조 제5항, 제99조 제8호의2 신설)

■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산시회 의견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합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수정안 제99조 8의2)
  - 이유: 현재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3자간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 신설

## 2023년 1/4분기 신기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번호(지정일자) 954(2023. 01. 09.)</li> <li>• 개발업체 (주)케이씨티이엔씨, 삼부토건(주), 디엘건설(주), (주)하나이엔씨</li> </ul>
<p>» 신기술명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p> <p>» 주요내용 블루투스5 기반의 MEMS무선센서와 무선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가시설, 옹벽 등 건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발생 시 근로자와 관리자,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실시간 경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안전 솔루션이다. 실시간 측정 및 경보, 오경보 발생 방지 기능, 센서 무선 스캐닝 등록 기능, EMC무선통신기술 등의 핵심 기술과 모바일 앱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격 점검 및 제어 등으로 건설현장 내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시스템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 향상이 가능한 IoT기반의 모니터링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번호(지정일자) 955(2023. 02. 15.)</li> <li>• 개발업체 무성토건(주), 한신공영(주),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경동엔지니어링, (주)헤인이엔씨</li> </ul>
<p>» 신기술명 특수케이싱과 렉기어가 장착된 일체형 오거를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시공법</p> <p>»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특수케이싱이 장착된 연결부 가이드가 선행 시트파일의 연결부와 맞물려 후속공을 연속천공하며, 케이싱보다 큰 직경의 해머비트를 이용하여 미굴착 영역이 발생하지 않아 연속벽 체인 시트파일의 근입 및 연결부 체결이 용이하다. 일체형 오거의 상부에 장착된 렉기어가 케이싱과 해머비트를 동시에 압입시키며 렉기어는 해머비트가 견고한 지반을 타격한 후 튀어 오르는 반발력을 제어하고 특수케이싱에 2~3m 간격으로 설치된 배출구를 통하여 고압의 에어를 즉시 외부로 분산·배출하여 케이싱 내 잔류하는 분쇄토를 천공홀 되메우기 재료로 이용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번호(지정일자) 956(2023. 02. 28.)</li> <li>• 개발업체 (주)한국건설공법, 동부건설(주), 양우건설(주), (주)한양, (주)호반건설</li> </ul>
<p>» 신기술명 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RC 스트럿을 형성하는 토압 지지 슬래브 역타공법</p> <p>» 주요내용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에서 지하외벽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도록 흙막이 벽체면까지 탈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데크를 탈형하여 토압 지지 시스템을 완성하는 토압 지지 슬래브 역타공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번호(지정일자) 957(2023. 02. 28.)</li> <li>• 개발업체 (주)삼림엔지니어링</li> </ul>
<p>» 신기술명 수중드론 결합형 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용 정밀조사기술</p> <p>» 주요내용 유속 0.4 m/s 이하의 환경에서 수중구조물의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brushing)해 손상부 및 균열 등을 조사하며, 손상부 발견시 눈금자가 새겨진 투명한성재질의 물주머니를 구조물에 밀착시켜 보정작업 없이 손상부 실스케일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0.3mm까지 손상(균열폭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수중드론(ROV) 결합형 수중 조사기술</p>

• 지정번호(지정일자) 958(2023. 03. 17.)  
 • 개발업체 (주)에이씨피, (주)전인씨엠 건축사사무소

- » 신기술명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축으로 드롭가이드와 스토퍼를 활용한 거푸집 설치·해체 드롭 공법(SSFD공법)
- »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프롭헤드, 드롭키, 보패널, SL시스템을 이용하여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하는 기술이다. 설치 시 SL시스템은 벽체 거푸집과 보패널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작업발판과 거푸집 드롭을 위한 추가부재 설치없이 해체작업이 가능하고, 필러서포트 설치가 필요 없는 거푸집공법이다. 드롭가이드가 완속 하강을 유도하고 스토퍼에 의한 거푸집 하강 높이의 제한 및 드롭충격 완충을 통해 소음 저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 지정번호(지정일자) 959(2023. 03. 17.)  
 • 개발업체 반석안전(주)

- » 신기술명 가속도와 변형률 기반 교량의 연직변위 무선측정시스템
- »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가속도와 변형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무선측정시스템과 이를 활용하여 교량의 내하력 평가를 위한 연직 변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무선측정시스템은 3축 가속도 및 3채널 변형률 측정이 가능한 장치로서, 실시간 100Hz로 데이터 계측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계측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계측된 이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직 변위를 산출한다.

• 지정번호(지정일자) 960(2023. 03. 24.)  
 • 개발업체 (주)디오티, (주)한국건설방재연구원

- » 신기술명 상시진동을 이용한 시공간분할기법 기반 교량 동특성 및 처짐 산정 기술
- » 주요내용 교량에 간편하게 무선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측정한 교량 상시 진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공간분할 알고리즘 기반의 교량 동특성(모드형상, 고유진동수) 및 유연도 분석으로 단위 하중 처짐을 추출하고, 다양한 하중에 대한 교량의 정적 처짐을 분석하는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 석봉건설(주) 대표이사 **한상호**



정상에 서면 다시  
내려가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줄이는  
감속의 기술이다.

석봉건설(주) 한상호(69) 대표. 철순을 앞둔 건삶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매끈하다. 균형 잡힌 몸매만 봐도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쓰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는 경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고교(신일고)와 대학(건국대 농화학과)을 나왔다.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식품 관련 1급기사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자부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막상 취업하기가 쉽지 않더라. 할 수 없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직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제 대학 성적이 뛰어났거든요. 면접관들이 ‘왜 공부를 더 하지 않느냐. 뽑아봐야 오래 있지 않을 것 같다’면서 외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표는 건설업체 서너 곳을 돌아다녔다. 이 중 철근반침대를 만드는 첫 번째 직장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다.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였는데 이익금이 대부분

시장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바람에 월급을 제때 못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금을 하지 않은 일까지 있었다. 한 번은 거래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수금도 하지 않느냐”고 하더라.

당시의 경험을 가슴에 소중하게 품은 한 대표, 거래업체와는 절대 당좌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

그가 사명을 석봉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지어주신 아명이 석봉이었고, 고교 시절 창문 밖에 보이던 백운대처럼 변함없이 강건한 회사로 키우겠다는 뜻도 담겼다.

한 대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좋아했다. 그래서 철제 펜스와 아파트 계단, 발코니 난간대를 시공하면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조립식 구조의 컬러강판을 선택했다. 국내업체가 수입해온 것을 그가 영남 쪽 판매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구에서 동업 형식으로 시작했다가 1998년 부산에 석봉건설을 차리면서 독자적인 사업의 길에 들어섰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샘플을 들고 마산과 창원 등지의 현장을 뛰었죠. 하지만 반겨주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몸서리쳤다. 다행히 옆에서 아내가 부업을 하면서까지 도와줘서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2, 3년 슬럼프에 빠져 고민이 깊어가던 즈음 상상하지도 못한 행운이 그를 찾아왔다. “서울 마포삼성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근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미 설치된 난간과 계단 마감재를 모두 철거하고 원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에 의해 외국의 고가제품인 컬러강판이 대체재로 선정됐다. 뿐만이 아니다. 주부모니터단에 의해 아파트 전 부문을 통틀어 1등으로 뽑혔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의 건설현장에 퍼져나갔다. 대우, 현대 등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기업체들이 앞다뮬 컬러강판을 주문했다. 애물단지였던 컬러강판이 알짜배기 효자종목이 된 것이다.

한 대표도 신바람이 났다. 덕분에 석봉건설은 그 이름대로, 그리고 그의 뜻대로 성장가도를 달리게 됐다.

지금 그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업체의 무용접 트러스트 제품을 부산 경남지역에서 샘플 시공 중인데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한다.

“대개 건물 외벽에 돌이나 패널을 붙일 때 용접을 하는데 화재 위험은 물론 용접품질도 균일하지 않아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조립만 하면 되니까 장점이 많죠.”

여기에 조경전문가인 딸과 사위까지 합류해 석봉건설의 취급 분야가 확 넓어졌다.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 순천만과 세종시, 부산시민공원 등에 이들의 작품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올렸다고 만족해 한다.

하지만 물극필반(物極必反)이랄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닥치는 법. 욕심을 부리다 기어코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캄보디아에 15억 원을 투자했다가 통째로 날려버린 거다. 그 스트레스로 한 대표는 밤잠을 자지 못해 정신병을 앓게 됐다.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 2년간량 정신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약이 얼마나 독한지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어요.” 마음을 비웠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모질게 마음먹었다. 그렇게 버틴 결과 힘겹게 벗어났다.

그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도 건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려가기도 했다. 등산과 당구 등 운동을 즐겨 하고, 항산화 음식을 잘 챙겨먹는다. 회사 옆에 회원제 당구장도 만들었다. 하루 6시간 수면의 꿀맛을 그는 소중히 여긴다.

한상호 대표, 그는 하산의 문화를 습득한 건삶인이다. 위를 향해 높이, 그리고 멀리 올라야 하는 등산은 고된 여정이다. 하지만 정상에 서면 다시 내려가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줄이는 감속의 기술이다. 지금 한 대표는 그걸 실천하는 중이다.

글 최원열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 (주)엔텍건설 대표이사 **나영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버티다 보면 또  
살게 될 테다.

염색하지 않은 백발의 그는 반듯하면서도 결코 호락호락한 인상이 아니다. (주)엔텍건설 나영찬(67)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나 실패의 쓴맛을 단단히 본 건삶인이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 말했다. “가장 명예로운 건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나 대표가 그랬다.

그는 드물게도 부산 토박이다. 거제리에서 태어나 동래중과 부산공고를 거쳐 동아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공대가 아닌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적성이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대학을 상대로 택했습니다. 졸업하고는 은행원이 되었죠.” 화이트칼라 직종인 기업은행에서 14년을 보내고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했다.



당시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에 내몰린 상태였지만 그는 호기롭게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다. 오히려 역발상의 기회라며 수입가구상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다. 은행에서 수입 외환거래를 담당하면서 선배 부인이 해운대에서 했던 이탈리아 수입가구상 운영 상황을 눈여겨 봐왔던 터였다. 그게 인연이 돼 마산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은행 근무지가 창원이어서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자신감도 있었죠. 주위의 만류가 심했지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웬걸, 단 1년 만에 쫓딱 망했다. “한 달 임대료만 4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형편없더군요. 한숨만 내쉬다 사업을 접었죠. 은행 퇴직금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절망의 늪에서 와신상담하던 그가 다시 도전한 게 건삶인이었다. “지인들의 강력한 권유에 철근 토공 사업을 시작했는데, 배운 게 없어서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된 기술밖에 없다고 판단한 그는 사명을 신기술이란 뜻의 엔텍으로 정했고, 특허권을 빌려 부산 경남지역에서 맨홀을 끌어 올려 설치하는 승고 및 교체 공사를 시작했다.

“새 기술을 적용하면 도로에서 작업할 때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히 양생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됐기에 작업이 끝나면 즉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엔텍의 성장에 큰 힘이 됐다.

이후 또 다른 신기술인 보강토블럭 옹벽사업을 십수 년째 해오고 있다. 2015년 정부에서 신기술로 지정한 보강토블럭 옹벽이란 저항력이 약한 흙 속에 보강재를 넣어 기존 콘크리트 옹벽을 대신하는 구조적 벽체를 말한다. 블록형으로 쌓아 올리기에 시공이 손쉽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답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성과 시공성을 철저히 따져 선택한 나 대표의 시의적절한 결정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지금까지 하자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보강토블럭 옹벽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나 대표는 아끼던 맨홀 사업을 흔쾌히 직원에게 넘겼다. “공무원들이 많이 상대해야 하는데 힘이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던 직원을 불러 의견을 물었더니 독립해서 사업을 떠맡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독자적인 특허도 내는 등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부산지역 일감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신기술을 고집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흐뭇하더군요.”

나 대표가 오늘날 부끄럽지 않은 건삶인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수입가구상 못지않은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그게 오통이처럼 일어서는 데 좋은 경험과 자양분이 됐다.

그는 10여 년 전 다대포 흥티마을 문화회관 골조공사를 2억 5천만 원에 따냈다. 그런데 공사에 들어갈 비계파이프 등 장비 하나 없이 덤벼든 게 화근이었다. 장비 임대비만 8천만 원이 들었다. 지출이 너무 많아 나 대표는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아뿔싸! 철수 당일 마무리 지시를 내리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급보가 날아들었다. 건물 옥상에서 직원이 던진 물건에 다른 회사 직원이 맞아 중상을 입었고 결국 수일 후 숨졌다.

“사전 지식과 경험도 없으면서 조그만 이익에 혹해 덤벼들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사업에 회의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실패를 기회로 여길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다. 이후 나 대표는 현장 점검을 절대로 게을리 하지 않는다. ‘조심, 또 조심!’이 현장 구호가 됐다.

나영찬 대표, 그는 살면서 겪은 온갖 풍파와 실패, 좌절의 경험들이 삶에 굳은살처럼 박힌 건삶인이다. 하지만 그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항상 자신이 직접 만들어냈고 이겨냈다. 그게 바로 회복탄력성이 아니던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버티다 보면 또 살게 될 테다. 그가 삶의 좌우명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정한 이유를 알 만하다.

글 최원열



# 01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안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고시(제2022-32호)

구분	종전	변경
고시금액	중앙행정기관: 81억원 공공기관: 244억원	중앙행정기관: 83억원 공공기관: 249억원

- 행정안전부 고시(제2022-84호)

구분	종전	변경
고시금액	244억원	249억원

### 02 적용기간 : 2023. 1. 1 ~ 2024. 12. 3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 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에서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안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정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의 88% 초과 투찰금액 제외 규정 삭제

### 02 시행일 : 2023. 1. 9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

## 03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주요내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02 적용기간 : 2023. 6. 30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단일·복수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명시(표지)
  - 표지에 단일 또는 복수공종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명시
  - ※ 무분별하고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지
-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명시(표지)
  -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하도급계약서에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표지)
  - 하도급계약서에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및 산출(공사)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함
  - ※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및 간접비 미지급 관행 방지

- 건설기계의 부당한 연식제한 금지(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제한으로 사용 및 운영을 금지시키는 부당행위 근절 규율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추가(제18조, 제19조, 신설 제20조)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안전 및 보건조치 확인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등
  - 수급사업자: 산재예방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등
-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신설 제34조)
  -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조건을 추가로 규율
  - ※ 하도급법 상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는 그대로 유지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시 원사업자 협조 및 의무사항 구체화(제41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기성부분 등의 확인을 5일 또는 15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정하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
- 수급사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급(제50조, 제51조)
  -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하도급내역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함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제56조)
  -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율

**02 개정일자** : 2022. 12. 28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제54조 제1항 신설)
  - 계약 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켰으나,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 \*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조정(제51조 제1항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15% 이상 → 10% 이상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7.5% 이상 → 5% 이상)
  - \*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제92조 제10항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 \* 2023. 9. 7 시행

**02 개정일자:** 2023. 3. 7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협회 의견 수용)
-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의무편성
- 경력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 교육·훈련분야 변경 신청 검토 근거 명확화
-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절차 명확화 등

**02 시행일자:** 2023. 3. 6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7

### 인지세법 개정 안내

인지세법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내용**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 납부기한 변경)

구분	변경
과세문서 작성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u>다음 달 10일</u>

**02 시행일자:** 2023. 3. 6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1

## 2023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와 「2023년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였다.

### 01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결과

계	공통	토목	건축	기계
356	237	79	39	1

- 스마트 건설기술 항목 신설
  -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 스마트 토공, PC구조물 원가기준 등
- 건설현장 안전 관련 기준 개선
  - 안전시설물 6종 원가기준 신설, 철도·궤도공사 임시신호기 계상기준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 대상 품셈 적용 기준 마련
  -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 설정

### 02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현황

계	토목	건축	기계
1,666	1,005	372	289

- 현장조사를 통한 제·개정\* 및 최근 8개월 물가지수\*\* 반영
  - \* 가설공사(토목/건축), 토공사, 포장공사, 수장공사 등 294공종
  - \*\* 1,372공종(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 반영)
- 토목부문 공종 개편 및 적용기준 개선
  - (토공사) 부대공 장비 투입 반영, 콘크리트 깨기 등 현장조건별 단가 신설 등
  - (도로 및 포장공사) 프라임코팅/택코팅, 기계식 살포 신설 등
- 건축부문 작업범위 및 단가구성 개선
  - 플로어링마루 등 신규단가 신설, 바닥재 및 도배 공종 적용공사 확대

### 03 2023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현황

계	기존 항목	신규 항목	삭제
324	322	10	8

- 유사 공종별·군 평균증감율 반영 등 현실화\* 및 지수\*\* 반영 조정
  - \* 사석투하, 사석정리 등 128공종
  - \*\* 176공종(생산자물가지수, 물가보정 지수 반영)
- 단가정의 수정 및 보완 등
  - 사석덤프적재 공종 단가정의 보완
  - 내부사석고르기 공종 수정·보완
  - 피복석고르기 및 피복석거친고르기 공종 작업선 현실화
  - 녹막이 및 조합페인트칠 공종 자재비 단가정의 명확화 등

### 04 적용시기 : 2023. 1.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2

##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조사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2022. 9. 1 ~ 9. 30
-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 불능을 나타냄
  -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직종번호 앞의 「\*」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 02 조사내용

- 평균임금현황
  - 전체직종: 255,016원(2022년 하반기(248,819원) 대비 2.49% 증가)
  - 일반공사 직종: 244,456원(2022년도 하반기: 237,006원)
  - 기타 직종: 257,558원(2022년도 하반기: 252,767원)
- 직종별 노임단가: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참조

### 03 2023년도 상반기 노임적용시점 : 2023. 1.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코스카톡 (KOSCA TALK) 애플리케이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고충 해결 및 의견수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코스카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완료하여 1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코스카톡」 애플리케이션의 주요기능 및 운영방식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01 운영목적

- 회원사의 고충 해소, 의견 수렴의 신속성·효율성을 극대화
- 중앙회와 회원사(대표자) 간 소통채널 운영

### 02 주요기능

- **신문고**
  - 회원사의 고충 등 중앙회의 조력·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회 회장 또는 소관 담당부서(팀)에서 답변
- **소통채널**
  - 회원사가 건설관계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요청시 중앙회에서 검토 답변 및 회원사 간 댓글 통해 의견 교환
- **설문참여**
  - 중앙회에서 국회 입법 활동과 대정부 건의시 회원사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 설문 또는 실태 조사 진행
- **공지사항**
  - 회원사가 알아야 할 주요 업무활동, 간담회 등을 신속하게 안내·홍보

### 03 운영방식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코스카톡' 검색 후 다운로드 또는 아래 QR코드로 설치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아이폰)  
iOS

-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핸드폰번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 ※ 대표자 핸드폰번호 등록은 부산시회 (☎051-633-0260)로 문의
  - ※ ID는 사업자번호로 자동 부여되며, 회원사당 1개 ID만 가입 가능
- ID(사업자번호)·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타기기 로그인·동시접속 가능
- 게시글에 대한 답변이나 댓글이 업로드 될 경우 푸시(PUSH) 알림을 통해 회원사(대표자)가 진행상황 및 결과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4

### 2023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안내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23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계수와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5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배포 안내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학교 내부나 인접(학교경계에서 50미터 이내)하여 신축·증축 등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로 인해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와 중앙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 주변 등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안전성평가 제도 안내
- 안전성평가서 주요 검토 사례
- 건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권고사항
- 안전성평가 FAQ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6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콘텐츠 목록 안내 (1월 2주차~3월 3주차)

우리 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 10. 13)을 통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매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2023년 1월 2주차~3월 3주차 건설·시설 안전 및 안전산업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매주 안내하는 안전 콘텐츠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7

## 국토안전관리원 2023년도 건축·안전관리·조경 직무 분야(최초, 계속, 승급) 교육과정 신설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2023년 건축·안전관리·조경 직무분야(최초, 계속, 승급)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였다.

### 01 교육대상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최초)

### 02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 이수시기	
			온라인	집체		
설계·시공 기술인	최초	①건축/안전관리/조경 ②토목/안전관리	35h	200,000원	280,000원	건설업무 수행 전
	계속					업무 수행 중 매 3년마다
	승급					상위등급 승급시
건설정책 역량강화	스마트 건설기술	무관 (전 직무분야 수강가능)	35h			직무/등급 무관
	해외시장 진출지원		35h			직무/등급 무관

### 03 교육비 환급대상(집체교육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

### 04 교육일정/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홈페이지(www.kalisedu.or.kr) '교육일정'에서 확인 가능

### 05 문의처 : 국토안전관리원(☎055-771-1905)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8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1. 7월부터 2022. 6월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50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건설사고 사례집'을 하였기에 부산사회는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사례집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09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등록 안내

대구광역시에서는 신기술의 도입과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해 신기술 플랫폼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신기술, 신공법 또는 특허공법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플랫폼에 등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홍보하고, 플랫폼에 등록된 우수한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술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 신기술 플랫폼 등록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구광역시 신기술심사과(☎053-803-5372)

※ 관련 리플렛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0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 배포자료 안내

국토교통부는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순서를 명확화하여 콘크리트 공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 관련 자료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11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시행 안내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 1. 31)되었다.

- 주요내용

-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기준이 개정(2022. 9. 1)됨에 따라 세부사항 인용 및 일치화: 거푸집 존치기간 명확화, 동바리 재설치 기준 수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2

## 「건설현장 패트럴 점검 추진」 및 「자체점검표 배포」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대상 패트럴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포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현장점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장점검 주요내용
    - 대상: 5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 시기: 연중 상시
    - 점검·확인: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집중점검,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
-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패트럴 점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3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 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우리 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 제작하여 회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매뉴얼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14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보증 체계 관리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산업 보증체계를 활성화하고 보증가입 현황 및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2월 16일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보증제도에 대하여 회원사에 안내했다.

-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13조의2)
  -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그 방법·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가능

- **위반시 제재사항**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 또는 벌금형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 **02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건설사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원도급·하도급 공사 모두 현장별 보증의 대상
-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가능  
\*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5개월 이내 또는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 또는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의무 면제

- **위반시 제재사항**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 또는 벌금형(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 **03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원사업자)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다만,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기공사의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 사항이 명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이 권장됨.

- **위반시 제재사항**

- 발주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의3)

- **04 보증의무위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 **신고대상**

보증의무 위반 등,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 **신고방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brocm>) ⇒ 국민마당 ⇒ e-클린센터  
⇒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대표전화 : 1577-822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 울산, 경남) 051-660-1036

# 15

##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고충해결을 위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에서는 상시적으로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신고하는 곳:**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FAX: 051-633-0261)
- **신고기간:** 상시접수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부산시회 사무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전문건설회관 4층)
  - FAX 신고: 부산시회 사무처(FAX: 051-633-0261)
- **신고대상 및 유형**

- **건설부조리행위 신고 유형**
  - 전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하도급 포함) 및 시공하는 행위
  - 건설업등록 업종과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 건설업체가 직영시공으로 위장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업체 이사로 등재한 후 소속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행위
  - 기타 건설부조리행위 등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추가공사 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반영하여 주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유형을 설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교부해주지 않는 행위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 행위

- **신고서식:**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에 게재

## 16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레비 등) 관련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안내

우리 협회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레비 등) 근절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 수수·약속·요구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2023. 1. 17, 김희국 의원)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방안 등 우리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023. 2. 21)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 수수시 「국가기술자격법」상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행정처분 개요

- (처분대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공익 저해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
- (법적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 소관 중앙부처의 장이 자격정지 가능

####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소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2년
-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자격취소

- (처분주체) 소관 중앙부처의 장
- (조사주체)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지방청에서 자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 경찰 수사 협조 등 가능
- (처분시기) 자체 조사,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처분요건이 확보되는 경우

### 02 부당행위 유형

- 월레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 03 행정처분 절차 : 신고접수 → 유선확인 및 자료요구 → 현장조사 및 수사협조 → 처분심의위 → 청문 → 처분 및 통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7

## 벌점 등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안내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피해 예방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한 선분양 제한 제도를 도입·시행(‘18. 9월) 중에 있다.

최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0. 11. 10. 개정, ‘21. 1. 1. 시행)으로 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 모집시기 기준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벌점 등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 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벌점 관련 제도 개정 현황

####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0. 11. 10. 개정, ‘21. 1. 1. 시행)으로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벌점 → 합산벌점으로 변경(단, 합산벌점 개정규정은 ‘23. 3. 1부터 적용)

\* ‘20. 하반기 ~ ‘22. 상반기 누계평균벌점 → ‘22. 9. 1 ~ ‘23. 2. 28까지 적용

\* ‘21. 상반기 ~ ‘22. 하반기 합산벌점 → ‘23. 3. 1 ~ ‘23. 8. 31까지 적용

- 無사망사고,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제도 도입

\* (무사망사고) 반기별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최대 59%까지 경감

\* (관리우수)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와 현장 비율에 따라 최대 1점까지 경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2. 10. 12. 입법예고, ‘23. 上 시행 예정)시 무벌점 마일리지 제도(관리우수 경감점수를 다음 반기로 이월) 도입

#### • 「주택법」 등 개정

- 「주택법」(‘18. 3. 13. 개정, ‘18. 9. 14. 시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8. 9. 18. 개정, ‘18. 9. 18. 시행) 개정\*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평균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선분양 제한) 제도 시행

\* (부칙) 개정 후 즉시 시행하되, 조합·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개정일 전에 계약체결 또는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 (기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골조공사 1/2 완료시)

\* (개정) 영업정지 처분 또는 「건진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 1. 1. 시행, ‘23. 3. 1부터 적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합산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제도 시행

\* 벌점 기준을 기존 1.0/3.0/5.0/10.0에서 3.0/5.0/7.0/10.0점으로 상향

\* 개정 규정 적용 전(‘23. 3. 1 이전)에 계약체결이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 02 세부내용 : 세부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공지사항 참조



# 18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수행 판단기준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레비 수수, 작업거부,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조종사 자격을 정지(최대 1년)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23. 2. 28부터)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불성실 업무유형과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발표('23. 3. 10)하였다.

### 01 추진현황

-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 2. 21)」 후속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적 태업 등을 하는 경우 면허정지토록 판단 기준 마련·시행

\* (부칙) 개정 후 즉시 시행하되, 조합·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개정일 전에 계약체결 또는 시공사 선정을 한 경우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 ① 월레비 등 부당금품 수수, ② 현장점거 등 공사방해, ③ 부당한 태업 등

### 02 불성실 업무유형(총 15개)

-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추거나 고의로 저속 운행하여 공정 지연 차질 발생하는 경우
- 작업개시 시간까지 탑승 등 작업준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원도급사 또는 임대사 승인 없이 안전점검 실시
- 원도급사 또는 임대사 승인 없이 조종석 임의 이탈
- 작업 도중 동영상 시청, 촬영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작업지시(요청)를 거부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 현장 내 CCTV, 과거 작업량 비교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 평가
  - 정당한 작업거부, 조종석 임의 이탈, 위법한 쟁위 행위는 1회 발생만으로 면허정지(최대 12개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19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행정해석 안내**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을 전문건설업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운영 관련 경미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보복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에 건설노조의 보복신고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계도 우선 등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경미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 신고 등의 경우 유선지도 등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도록 지침을 마련(‘23. 2. 27)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고용노동부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행정해석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노조 대응 및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해석 주요내용
  - 크레인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관련
  -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관련
  - 크레인 양중작업 대상 중량물 관련
  - 타워크레인 인양 중량물의 장소 제한 관련
  - 타워크레인의 상하 좌우 이동 관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

## **신기술사용협약제도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 (MOU) 체결 안내**

우리 협회 중앙회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시공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기술 사용협약제도」 활성화를 통해 회원사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2023. 3. 13(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협회는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등의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회원사의 수주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 신기술사용협약제도: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도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어 신기술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

## 21

### 영남권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지역협의체(부울경권) 구성

건설산업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지속적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정부의 강경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영남권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회도 동 협의체에 구성되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2023년 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고용노동청, 공정거래사무소, 각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지역협의체(부울경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활동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대응방법과 협조사항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및 신속한 신고접수·처리, 홍보, 제도개선 건의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혔다.

한편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위해 2023년 3월 21일부터 부산지역 구(군)청 주요 행정계 시대에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에 나섰다.

## 22

### 도장공사 하자판단 기준 안내

최근 도장공사 시공과정에서 선행공사(콘크리트 공사, 건축공사, 미장공사 등)에서 기인한 하자(균열, 결로, 습기, 오여 결합) 및 사용 중 발생한 생활하자를 도장공사 하자로 전가하는 민원과 이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회원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에서는 사업주체 및 원·하도급 간의 하자 갈등과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8개월간 도장공사 하자 조사, 보수비용의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정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추진 성과물인 「도장공사 하자판단 기준집」을 제작 완료하여 부산시회는 이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기준집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3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안내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조 및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협회 중앙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안내했다.

또한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신고**
  -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배너 활용
  - 「코스카톡」 어플리케이션 신고센터 메뉴 활용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051-633-0260)
  - 경찰청(☎11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31)

※ 매뉴얼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24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내문 등 홍보 요청이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01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 시 노후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함.
  -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 (1차) 조치이행 및 개선명령
    - (2차) 1차 조치이행 및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사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02 사용제한 대상 노후건설기계

-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 분쟁 해법**

**1 원도급자, 직불합의 내세워  
추가공사비 발뺌할 때**

하도급업체 A사는 원도급업체 B사로부터 C 지자체의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70억원에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A사는 하도급공사 시행 전에 직불합의의 요청을 했고, 이에 발주자 C·B사·A사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 합의가 됐다. 그러나 공사 수행 도중 설계와 공사물량에 변경이 있어 공사금액이 10억원 증가했으나 B사는 5억원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공사를 마친 후 B사에 남은 기성 10억원과 증가액 10억원 등 합계 20억원을 청구했는데 B사는 이미 발주자 직접 지불 합의로 지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답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자체로 보면 합의한 때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B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 즉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하도급업체의 의사에 반해 원도급업체가 이 하도급법상의 직불합의로 인한 대금지급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하도급법 제1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하도급업체만이 원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또한, 3자 간 합의로 채무소멸이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이 사안과 같이 공사대금액에 관해 원·하도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이 확정돼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사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사는 B사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2 돌관공사비 받으려면  
평소 입증자료 챙겨야**

건설공사 중 원사업자의 요구로 진행된 돌관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돌관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계약변경을 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공문을 통해 돌관공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됐고,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추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의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등).

결론적으로 말해 돌관공사비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때는 돌관공사를 지시했다는 주장 내지는 위 판례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평소에 인지하고 대비해 작업하는 게 좋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전문건설 기술자 이중 취업 위배건**

- Q**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면서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사업자등록증 가능한지요. 이중 취업 조건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문구점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업에 종사하면서 2개 이상의 면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A** 문의하신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종목, 등급 등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비교1에 따라 상시근무자이어야 하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인에서 대표자이든 임직원이든 겸직하는 경우(무보수, 비상근 포함)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5. 07. 09



**건설기술자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Q** 1)건설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라 하였는데 상시근무자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자사 방침에 의한 근무시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에서 인정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 여부.  
2)자사 기술자가 근무시간(9:00~18:00)이 끝나고 다른 아르바이트(아이 돌보미 등 18:30~20:30)을 하였을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자사 기술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자사 기술자를 산재에 가입시켜 산재중복으로 등록될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A** 1.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종목, 등급 등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비교1에 따라 상시근무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기술능력으로 인정받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상시근무를 적용하고 있어 기술능력으로 인정받는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무보수, 비상근 포함)하여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3. 04. 03



**대법원 2012.3.29.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 [공2012상,663]**

**Q 판시사항**

가.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도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A 판결요지**

가.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 <건설업 기업진단>

### 1.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이해

건설업은 등록을 요구하는 업종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행정처분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은 자본금이므로 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자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이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예규로 건설업관리규정을 고시하는 바, 관리규정의 별지 2호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의 적용 범위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은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에게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진단자는 물론이고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심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의 내용을 숙지해 본인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을 상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3.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의 적용 한계

기업진단지침은 해당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진단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 자본금 산출을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특별한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수정해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단지침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 4. 기업진단지침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진단지침은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본금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와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만은 아닙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단지침은 K-IFRS를 적용해 실질자본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기업진단의 준거가 K-IFRS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진단자 또는 심사자 스스로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제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계산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자 등의 수고가 더해질 뿐 건설업자는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장부와 입증자료를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의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번 확정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제시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무조건 신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단자와 심사자는 계정과목별 입증자료를 통해 금액의 적정성과 실재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차이는 물론이고 계정과목의 실재성도 다시 판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진단자가 스스로 이를 해태하거나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각 진단자의 소속협회에 감리를 요청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사 재무상태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업 기업진단 절차>

#### 1.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회사제시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항목입니다.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제시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항목입니다.

#### 2. 겸업사업과 겸업자산부채

겸업사업은 진단대상이 되는 건설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업자산은 진단지침에 겸업자산으로 특별히 열거한 것과 겸업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을 가리킵니다. 겸업부채는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입니다.

#### 3.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과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은 위 1번에서 계산한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는 역시 1번에서 계산한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

진단대상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는 것이며, 회계학에서 자본의 금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금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결국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며,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3. 1. 1. ~ 2023. 3. 31.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관우티앤씨 (대표자: 김서곤, 충북)	(주)대산디자인 (대표자: 김수복, 경기)
(주)네오필드 (대표자: 최재우, 경남)	(주)블루웨이 (대표자: 김상곤, 경북)
대한개발공사(주) (대표자: 김미리내, 세종충남)	(주)앱스 (대표자: 조용학, 서울)
디에이치건축소방(주) (대표자: 조영자, 경남)	(주)에이치와이코넨 (대표자: 양난경, 전남)
디자인에코 (대표자: 이돈희, 경남)	(주)우성석건 (대표자: 유창수, 경남)
라이프조경(주) (대표자: 전종훈, 경북)	인스디자인 (대표자: 임호용, 경북)
(주)삼보글로벌 (대표자: 이진욱, 경기)	(주)청수이앤씨 (대표자: 박동훈, 경북)
삼성철강 (대표자: 정재형, 경남)	화성궤도(주) (대표자: 김장환, 서울)
씨에이건설(주) (대표자: 김길락, 경남)	
(주)우솔 (대표자: 이희규, 김해)	
(주)일성석면환경 (대표자: 최현숙, 경남)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2023. 3. 31. 기준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중구	29	49	연제구	160	224
동구	67	104	해운대구	281	372
서구	29	34	수영구	127	184
사하구	91	134	부산진구	168	229
영도구	28	41	북구	99	130
동래구	209	255	사상구	140	172
남구	127	169	강서구	280	380
금정구	274	390	기장군	222	316
			<b>합계</b>	<b>2,331</b>	<b>3,183</b>

###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 변경 현황

2023. 1. 1. ~ 2023. 3. 31.

변경 전	변경 후
가치있는집디자인	가치있는공간디자인
(주)미공의장	(주)디오건축
(주)보스텍이앤씨	(주)대조이앤씨
(주)수디자인	(주)예림디자인컴퍼니
(주)예맥이앤씨	(주)디자인유원
(주)중부건업	(주)중부
(주)진구종합건설	(주)진구개발
(주)포이든	(주)비손
(주)하이종합환경	(주)하이조경
창보건설(주)	에이브이건설(주)
초석건설산업(주)	초석에이치디(주)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변경 현황**

2023. 1. 1. ~ 2023. 3. 31.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주)가야산업개발	김성훈	김혜주
(주)나라조경	윤태균	황서연
(주)네오그린	정양모	김중돈
(주)누리건축	김명희	김명희, 박승일
(주)대양디앤씨	신민철, 이지영	신민철
(주)대원씨앤디	유민수	류민수
(주)대원이엔씨건설	손건호	손건호, 이지은
(주)더좋은금강	한국인	한국인, 김재규
(주)리한건설	김호성, 송상임	김호성
(주)비손	박정훈	김영석
(주)생명나무	김화순	이혜진
(주)성판	김지인	이현승
(주)아스코건설	김우섭	김상욱
(주)에이비엠	한기영	한기영, 김정훈
(주)에이치제이중공업	홍문기	홍문기, 유상철
(주)예림디자인컴퍼니	이수안	장지선
(주)오주산업	강남규	제영욱
(주)우리건설	이병철	김현범
(주)우주이엔씨	이석준	정민주
(주)유이이엔씨	장주성	장은성
(주)은화	김익표	김도형
(주)이로운	윤영욱	장다겸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주)인지건설	최삼식	임경태
(주)자유건설	김정호, 김춘근	김정호
(주)코로코트코리아	김성환	김성환, 편도주
(주)토목	유종철, 한동훈	유종철
거림건설(주)	박향숙	조영수
남부공항서비스(주)	조영진	조현영
대창강건(주)	강현우	강성식
미소건설(주)	양진숙	김강빈
비엔디건설산업	임동규	김선호
수림조경건설(주)	김선수	임진희
아베스토건(주)	이애연	이정후
우승건설(주)	노덕환	박성두
은진개발(주)	조종언, 김기엽	조종언
이브(주)	정래근	정선욱
제이인테리어디자인(주)	손태우	이재현
조원산업(주)	성병조	강점순
초석에이치디(주)	박성진	박성진, 최균영, 최슬기
탑런컴퍼니(주)	김학수	이경진
피앤룩스(주)	박해용	고성아
한국라이언기초건설(주)	장정복	박승완
한국팽이건설(주)	박해준	박종국
휘람건설(주)	주무은, 이상준	주무은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3. 1. 1. ~ 2023. 3. 31.

 <p><b>광산이엔씨(주)</b> 부산 동래구 반송로 352, 5층 503호 (명장동, 훈창빌딩) <b>T: 051-508-4748</b> 보유업종: <b>지반조성·포장공사업</b></p> <p><b>김정호</b></p>	 <p><b>(주)국제기산</b> 부산 사하구 다산로176번길 58 (장림동) <b>T: 051-266-5460</b> 보유업종: <b>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b></p> <p><b>김덕신</b></p>	 <p><b>(주)금원건설</b> 부산 금정구 회전로5번길 12, 1층 2층 (회동동) <b>T: 051-532-0075</b> 보유업종: <b>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b></p> <p><b>김미수</b></p>
 <p><b>(주)다신컴퍼니</b> 부산 수영구 수영로540번길 74 (광안동) <b>T: 051-508-4748</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최미석</b></p>	 <p><b>(주)대도씨엔이</b>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804호 (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b>T: 051-731-4579</b> 보유업종: <b>철강구조물공사업</b></p> <p><b>배지명</b></p>	 <p><b>(주)대원이엔씨건설</b> 부산 서구 보수대로264번길 14, 405호 (동대신동3가, 금농화인빌리지) <b>T: 051-257-2610</b> 보유업종: <b>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b></p> <p><b>손건호</b></p>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3. 1. 1. ~ 2023. 3. 31.

 <p><b>(주)대원이엔씨건설</b> 부산 서구 보수대로264번길 14, 405호 (동대신동3가, 금봉화인빌리지) <b>T: 051-257-2610</b> 보유업종: <b>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b></p> <p><b>이지은</b></p>	 <p><b>(주)도담씨앤에이</b>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523호 <b>T: 070-4790-1899</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김채현</b></p>	 <p><b>(주)동이개발</b>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34번길 23-1 <b>T: 051-781-4448</b> 보유업종: <b>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b></p> <p><b>이상재</b></p>
 <p><b>동일고무벨트(주)</b> 부산 금정구 공단동로55번길 28 (금사동, 동일고무벨트) <b>T: 051-520-9000</b> 보유업종: <b>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b></p> <p><b>이윤환</b></p>	 <p><b>(주)두손</b>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347번길 5, 201호 (대저1동) <b>T: 051-973-6215</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정성근</b></p>	 <p><b>(주)드림이엔지</b> 부산 동구 중산로 6, 1층 (좌천동) <b>T: 051-468-3460</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이율진</b></p>
 <p><b>디자인기쁨34</b>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867번길 51-10 1층 <b>T: 051-542-3456</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박성희</b></p>	 <p><b>디자인노보(주)</b>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7, 407호 (부전동) <b>T: 051-942-6061</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정현우</b></p>	 <p><b>(주)디자인존</b>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459번길 74-6 (안락동) <b>T: 051-465-8303</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권성은</b></p>
 <p><b>(주)디자인전그룹</b> 부산 수영구 수영로 457, 4층 (남천동) <b>T: 051-757-4750</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허진</b></p>	 <p><b>(주)디자인행들</b>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2107호(재송동, 센텀스카이버즈) <b>T: 051-717-0486</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김흥구</b></p>	 <p><b>(주)리웹디자인</b> 부산 중구 대교로 133 (중앙동5가)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김민규</b></p>
 <p><b>(주)명인테리어</b> 부산 금정구 반송로 449 (금사동) <b>T: 051-703-8222</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문정선</b></p>	 <p><b>(주)무찬</b>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1397번길 188 (봉림동) <b>T: 051-972-5670</b> 보유업종: <b>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b></p> <p><b>김인식</b></p>	 <p><b>부산테크(주)</b> 부산 수영구 연수로404번길 30 (광안동) <b>T: 051-702-9080</b> 보유업종: <b>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b></p> <p><b>문진국</b></p>
 <p><b>(주)브레인힐즈</b> 부산 강서구 대저로 280-17 (대저1동) <b>T: 051-715-7776</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김명진</b></p>	 <p><b>(주)삼광종합건설</b>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302 (전포동) <b>T: 051-817-6966</b> 보유업종: <b>실내건축공사업</b></p> <p><b>이근수</b></p>	 <p><b>(주)삼이에코빌</b>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백산이센텀클래스원 708호 <b>T: 051-628-5590</b> 보유업종: <b>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병공사업</b></p> <p><b>박종갑</b></p>



**(주)삼아에코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이센텀클래스원 708호  
**T: 051-628-5590**  
 보유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배관공사업

**박민준**



**삼흥건설(주)**  
 부산 강서구 제도로 983, 201호  
 (강동동)  
**T: 051-974-0438**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손인수**



**(주)생명나무**  
 부산 사하구 사리로 55 2층  
 (괴정동)  
**T: 051-207-2247**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혜진**



**(주)서린기업**  
 부산 남구 수영로 312, 1023호  
 (대연동, 21세추리시티오피스텔)  
**T: 051-610-1364**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김나미**



**서명건설(주)**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155번다길 8,  
 2층 2호  
**T: 051-710-977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권영군**



**서주건설(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133  
**T: 051-988-5646**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석창영**



**수림조경건설(주)**  
 부산 금정구 소정로 41-1, 201호  
 (장전동)  
**T: 051-513-7350**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임진희**



**(주)스톤케이디엠**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88, 101동  
 609호 (좌동)  
**T: 051-912-8626**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곽명섭**



**(주)신우산업개발**  
 부산 동래구 총령대로108번길 12, 3층  
 (온천동)  
**T: 051-505-7171**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김현미**



**(유)아키인**  
 부산 남구 용소로46번길 4, 102호  
 (대연동, 아이노스오피스텔)  
**T: 051-756-050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정현**



**양지조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87번길 14,  
 상가동 105호(거제동, 동래화신타운)  
**T: 051-853-8514**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김금실**



**(주)엠앤제이플랜**  
 부산 동래구 여고로91번길 47  
 (사직동)  
**T: 051-506-146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우명화**



**(주)영도비계**  
 부산 강서구 수가로716번길 22-7  
 (범방동)  
**T: 051-973-2352**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김세윤**




**(주)예건**  
 부산 금정구 삼여로 219, 3층  
 (금사동)  
**T: 051-751-789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홍수지**



**(주)우단건설**  
 부산 동래구 미남로 51, 2층  
 (사직동)  
**T: 051-507-8807**  
 보유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민건태**



**우리집인테리어**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49번길 7-20  
 지하1층 제비이101호(좌동, 블루하이텔)  
**T: 051-503-154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정두용**



**(주)우린토건**  
 부산 영도구 태종로65번길 5  
 (대교동1가)  
**T: 051-413-7746**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임재삼**



**유정개발(주)**  
 부산 동래구 쇠미로217번길 58  
 (온천동)  
**T: 051-503-154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유정희**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3. 1. 1. ~ 2023. 3. 31.

 <p><b>(주)일산이앤지</b> 부산 금정구 금단로210번길 9, 101호 (남산동, 골든하우스) <b>T: 051-518-4702</b>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p> <p><b>김재현</b></p>	 <p><b>(주)일우종합개발</b>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87, 1층(구서동 세화빌딩) <b>T: 051-914-2465</b>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p> <p><b>엄혜경</b></p>	 <p><b>(주)제이디앤씨</b> 부산 남구 우암로 146 (우암동) <b>T: 051-645-3336</b>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박성훈</b></p>
 <p><b>제이인테리어디자인(주)</b> 부산 수영구 광남로 69, 3층 (남천동) <b>T: 051-554-0716</b>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이재현</b></p>	 <p><b>(주)주승</b> 부산 사상구 삼락천로 185 (삼락동) <b>T: 051-303-1173</b>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p> <p><b>김외숙</b></p>	 <p><b>(주)지엔</b>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554-3 (두구동) <b>T: 051-554-0716</b>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b>박소영</b></p>
 <p><b>(주)천하티이더블유</b>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11, 1734호 (민락동, 서희스타힐스센텀프리모) <b>T: 051-623-3331</b>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p> <p><b>장승일</b></p>	 <p><b>(주)코로코트코리아</b> 부산 중구 충장대로 11, 1403-에이호 (중앙동4가, 무역회관빌딩) <b>T: 051-462-2555</b>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p> <p><b>김성환</b></p>	 <p><b>토양건축(주)</b>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곡길 166-1, 109호 <b>T: 051-924-3288</b>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이남숙</b></p>
 <p><b>(주)피앤피플랜트</b>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196, 2층 <b>T: 051-938-6006</b>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p> <p><b>김경진</b></p>	 <p><b>해진조경(주)</b> 부산 금정구 남산로 48, 2층 (남산동) <b>T: 051-515-9518</b>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b>김정숙</b></p>	 <p><b>(주)현재건설산업</b> 부산 기장군 정관읍 구연2로 8, 1층 B호 <b>T: 051-728-3168</b>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b>문선희</b></p>
 <p><b>(주)홍익디앤디</b> 부산 연제구 과정로 137, 818호 (연산동, 삼호라이프레포호텔) <b>T: 051-754-2510</b>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p> <p><b>김명진</b></p>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3월 22일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충북 청주상당)과 건설산업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 업역 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하자담보책임제도 책임성 강화 △공휴일 수당 등 하도급공사 간접비 반영제도 마련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 ▷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3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갑)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 업계 현안 관련 대국회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과 허 의원은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아울러 △상호경쟁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중대형 공사(30억원 이상)에만 적용해 경쟁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시적인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영구화하고 금액 상향(10억원 이하 전문공사에 종합참여 배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문건설업계 건의과제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질 책임성 강화 △공휴일 수당 등 하도급공사 간접비 반영제도 마련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조속 개정 등을 전달했다.
- ▷ 윤학수 중앙회장은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회장 박종면)와 3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 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건설교통신기술 적용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신기술 사용협약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기술 협약자제도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특별용자에 나선다.  
 조합은 3월 20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용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별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용자이율은 COFIX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의 가산이율이 적용돼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3월 기준 연 3.53%~4.13%, 3개월 변동금리)로 용자를 이용할 수 있다.  
 용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특별용자는 용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용자 상환기일에 용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보증의 수수료율을 20% 인하하고, 위험가중치도 40% 인하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늘렸다.

## 부산시회 2023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비고
2023. 5월 중	제1차 전문건설인 오찬세미나(예정)	
2023. 5. 31.(수)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접수마감(개인)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수칙

### ☑ 해빙기 주요 사고 유형

- ☑ **지반응대로 인한 굴착면 무너짐**
  - ↳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 배수로** 측구 및 **방수천막** 설치



- ☑ **지반 연약화로 흙막이 무너짐**
  - ↳ 흙막이 지보공 **이상유무** 점검
  - 토사유출** 및 **표면 수유입 방지** 조치



- ☑ **지반침하에 따른 장비 전도**
  - ↳ 장비 **거치지반 지내력** 확보 및 **받침목** 설치



### ☑ 해빙기 날씨 전망

구분	기온	강수량	날씨전망
2월	평년 0.6 ~ 1.8℃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27.5 ~ 44.9mm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 각각 40%)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 오는 때가 있음
3월	평년 5.6 ~ 6.6℃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42.7 ~ 58.5mm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주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날이 있음
4월	평년 11.6 ~ 12.6℃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각각 40%)	70.3 ~ 99.3mm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주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날이 있음

### ☑ 해빙기 핵심안전수칙

- 절성토 굴착면**
- 1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 2 배수로 측구 및 방수천막 설치
  - 3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 흙막이 지보공**
- 1 흙막이 지보공 변형 손상 여부 점검
  - 2 계측관리 실시 및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
  - 3 배면 토사유출 및 표면 수유입 방지 조치

- 지반**
- 1 지반 침하·균열·변형 여부 점검
  - 2 지하매설물(가스, 상하수도, 관로) 안전상태 점검
  - 3 장비 거치지반 지내력 확보 및 받침목 설치

- 거푸집 동바리**
- 1 콘크리트 적정 강도 확보
  - 2 거푸집동바리 촌치기간 준수
  - 3 거푸집동바리 침하·변형·흔들림 상태 점검



## 해빙기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 ☑ 굴착면 무너짐 예방조치

중점 점검사항	확인자
1-1 굴착 적정 기울기 확보, 굴착면 절리·균열 발생 확인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1-2 굴착면 상부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배수로 측구, 방수천막 설치 등)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1-3 토석 무너짐·낙반 위험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1-4 법정 굴착면 기울기 미확보 시 지반 안전성 검토 결과 기울기 준수 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 ☑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예방조치

중점 점검사항	확인자
2-1 흙막이 지보공 손상·변형·부식·변위 발생 확인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2-2 계측관리 실시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2-3 배면 토사유출 및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2-4 굴착 및 주변 지반의 균열·함수·용수·동결 유무 확인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2-5 흙막이 배면 차량운행 및 중량물 적치 금지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 ☑ 지반침하 예방조치

중점 점검사항	확인자
3-1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침하·균열·변형 발생 확인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3-2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보호조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3-3 건설기계장비 거치지반의 지내력 확보 및 받침목 설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 ☑ 거푸집 및 동바리 무너짐 예방조치

중점 점검사항	확인자
4-1 콘크리트 적정 강도 확보 및 거푸집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4-2 거푸집동바리 또는 비계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확인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4-3 거푸집동바리 또는 비계 하부 지반 평탄성 확보 및 받침대 설치	현장 소장 ..... <input type="checkbox"/> 관리 감독자 ..... <input type="checkbox"/>

## 2023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 2023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 04 2023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5-7월)

교육차수	신청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수료증 발급
		부터	까지	
제17기	5. 3	5. 6	5. 12	
제18기	5. 11	5. 13	5. 19	
제19기	5. 15	5. 17	5. 23	
제20기	5. 18	5. 20	5. 26	
제21기	5. 25	5. 27	6. 2	
제22기	6. 1	6. 3	6. 9	
제23기	6. 8	6. 10	6. 16	
제24기	6. 12	6. 14	6. 20	
제25기	6. 15	6. 17	6. 23	
제26기	6. 22	6. 24	6. 30	
제27기	6. 29	7. 1	7. 7	
제28기	7. 3	7. 5	7. 11	
제29기	7. 6	7. 8	7. 14	
제30기	7. 13	7. 15	7. 21	

#### 05 2023년 집합교육 일정(5-7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17기	05월 12일	울산	울산박물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77, 2층 세미나실 II)
제18기	05월 19일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지하층 흥천강실)
제19기	05월 2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20기	05월 26일	목포	목포대학교박물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지하 세미나실)
제21기	06월 02일	대구	대구무역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22기	06월 09일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23기	06월 16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제2연수관 109호)
제24기	06월 20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25기	06월 23일	창원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나눔홀)
제26기	06월 30일	경주	동국대 경주WISE캠퍼스(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100주년기념관 D501호)
제27기	07월 07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제28기	07월 1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29기	07월 14일	천안	천안축구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중세미나실)
제30기	07월 21일	순천	순천상공회의소 (전남 순천시 장영로 18, 5층 컨퍼런스홀)

# 꿈꿔온 미래를 현실에서 만나다!

## 챗GPT ChatGPT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처럼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척척 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 채팅처럼 간단하게 질문하면 전문가가 쓴 것처럼 즉각적으로 답해주는 챗GPT는 공개된 지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기술의 발전,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다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AI, openai.com)'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며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오픈에이아이'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와이컴비네이터 사장(현 오픈AI CEO) 등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디지털 지능을 개발하고자 2015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2022년 11월 30일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개발하였다.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달리2(DALL-E2)', 다국어 음성인식 인공지능 '위스퍼(Whisper)' 등에 이어 공개된 챗GPT는 2018년 출시된 'GPT-1', 2019년 'GPT-2', 2020년 'GPT-3'으로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왔다. 'GPT-3.5'에 해당하는 챗GPT는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훈련된 대량 생성 변환기를 사용하여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구현해내며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챗GPT가 지금처럼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담은 에세이나 논문 등을 순식간에 작성하는 능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명문 경영전문대학원(MBA) 펜실베이니아대의 와튼스쿨에서 치러진 필수 과목의 기말시험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는다 하면,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로스쿨 시험에서는 과목을 수료할 수 있는 성적을 거뒀으며,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의료기관인 앤서블헬스 연구진이 챗GPT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의사 면허시험에서 5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한 것이 알려지며 2023년 1월에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챗GPT가 1994년 웹브라우저, 1998년 구글 검색엔진, 2007년 아이폰에 이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챗GPT를 악용해 과제나 시험을 치르는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술력으로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날이 커지는 중이다. 꿈꿔오던 상상이 현실이 된 지금, 앞으로 챗GPT가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 대한민국 1호 공설해수욕장의 자랑거리! 송도용궁구름다리

1913년 7월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이자 최초의 근대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아미산의 남쪽에 위치한 암남(岩南)공원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암남공원에서 동점으로 이어지는 송도용궁구름다리는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글 조수진

현재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송도(松島)’는 소나무가 자생하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위를 둘러싼 송림과 넓은 백사장 그리고 얇은 수심의 잔잔한 바다 물결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방문객들이 송도해수욕장을 찾게 만든다. 특히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km 구간 동안 영도와 남항 등의 전경을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와 함께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송도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다.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과 거북섬을 연결하는 ‘송도구름다리’가 2002년 태풍 셀마로 파손되어 철거된 지 18년 만에 재건되며 탄생했다. 암남공원에서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하는 폭 2m, 길이 127m의 송도용궁구름다리를 거닐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만끽할 수 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송도 바닷가와 기암절벽이 빚어낸 천혜의 경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송도용궁구름다리의 입장료는 1,000원이며 부산 서구민 혹은 7세 미만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급)의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송도용궁구름다리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과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개방되며, 정기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장한다. 개방 시간은 3월~9월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입장 마감 시간은 5시 30분이며 10월~2월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 마감 시간은 4시 30분이다.

따뜻한 햇살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송도바닷가를 거니는 색다른 경험을 느끼고 싶다면 송도용궁구름다리를 추천한다.

사진 송도용궁다리 ©부산관광공사 VISIT BUSAN



##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테네의 신전 **파르테논**

고대 그리스 시기, 아테네의 수호신인 지혜의 여신 아테나(Athena)에게 바쳐진 파르테논(Parthenon)은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서도 손꼽힐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이다. 파르테논은 기원전 448년부터 기원전 432년까지 당대 최고의 조각가와 건축가의 설계로 16년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도리스 양식의 걸작이라 불린다.

글 조수진

기원전 479년에 페르시아인이 파괴한 옛 신전 자리에 재건된 파르테논은 익티노스가 설계하고 칼리크라테스가 공사 과정을 감독하였으며, 기원전 447년에 기공하여 기원전 438년에 완성되었다. 동서로 30m, 남북으로는 약 70m에 이르는 거대한 신전인 파르테논은 동서면으로는 각각 8개, 남북면으로는 각각 17개의 기둥으로 지어졌다. 엄숙하고 장중한 느낌의 도리아식 기둥은 고대 그리스인이 중시했던 이상적인 균형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파르테논은 얼핏 보기에는 직선과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과 곡면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건축물이다. 특히 기둥의 설계에는 기둥의 가운데를 양끝보다 두껍게 하여 긴 기둥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엔타시스 양식'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착시효과까지 생각하여 설계·제작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균형미, 파워풀한 무게감 등으로 파르테논은 2,500년 동안 서구 건축의 원형이자 하나의 모델로 여겨진다.

파르테논 신전 내외부를 장식하는 조각은 기원전 5세기 당시 최고의 조각가 페디아스의 작품이다. 신전 외부의 메토포와 내부의 벽을 두르고 있던 프리즈를 장식하던 조각들은 신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 고전기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정된 비례와 뛰어난 인체 묘사 등 수준 높은 조각 기법을 보여준다. 하지만 1801년 그리스를 방문한 영국의 토마스 엘гин이 파르테논 내부의 조각을 해체하여 영국으로 가져간 이후, 대부분의 작품은 아직도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르면서 파르테논은 신전 외에도 교회, 회교 사원, 무기고 등으로 사용되며 조금씩 손상되어 왔다. 유네스코(UNESCO)는 파르테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하였으며,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로도 파르테논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르테논은 오늘날까지도 구조·장식·디자인·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그리스 고전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 오토라는 남자

개봉 2023. 3. 29. | 감독 마크 포스터  
출연 톰 행크스 등

#### 영화로 만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오베라는 남자』

<오토라는 남자>는 전 세계 1,300만 독자의 선택을 받은 베스트셀러 소설 『오베라는 남자』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다. 오토는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까칠하고 무뚝뚝한 인물이다. 사랑하는 아내 소냐를 잃은 뒤 흑백 같은 인생을 살며 아내의 곁으로 떠나고 싶어 하던 오토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이웃사촌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으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따뜻하고 유쾌한 감동스토리를 담아낸 <오토라는 남자>. 2023년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 TOP5를 기록하며 국내 관객들의 관심을 한층 더 높였다.

### 리바운드

개봉 2023. 4. 5. | 감독 장항준  
출연 안재홍, 이신영, 정진운, 김택, 정건주, 김민, 안지호 등

####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부산중양고 농구부의 감동 실화!

<리바운드>는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대회에 단 6명의 엔트리로 출전한 최약체팀 부산중양고등학교 농구부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코트 위를 누비며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영화다. 영화 속에서 농구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 양현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양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된다. 전국대회에서 첫 경기 상대로 고교농구 최강자 용산고 팀을 만난 중양고 팀은 몰수패와 함께 농구부 해체 위기를 겪는다.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서로의 갈등을 풀어내고 위기를 함께 돌파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은 재미와 감동, 웃음과 눈물을 선사한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책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알라딘'의 2023년 3월 5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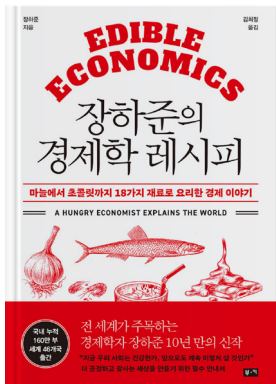


## 세이노의 가르침

1

세이노 | 데이원 | 7,200원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No!”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필명을 정한 세이노는 2023년 기준 순자산 천억 원대의 자산가다.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칼럼을 통해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전해왔다. 이 책에는 과거 발표한 글과 최근의 생각들을 수록하였으며,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삶의 자세부터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주요 서점 및 그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세이노의 가르침』 전자책과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2

장하준 | 부키 | 18,000원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10년 만에 펴낸 신작이다.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와 음식을 통해 가난과 부, 성장과 몰락, 자유와 보호, 공정과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영화와 국영화, 규제 철폐와 제한,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을 담았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에서 경제와 관련된 편견 너머의 대안과 비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 사장학개론

3

김승호 | 16,000원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은 미국에 거주하며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경영철학을 담아 이 책을 펴냈다. 저자는 지난 7년간 3천여 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을 진행해왔다. 사장 제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공통적인 어려움을 목차의 120가지 주제로 냈으며, 도움이 되는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사장을 위한 실무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살펴보자.

## 내일의 지구를 위한 약속

# 탄소중립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약 2조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온실효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 모두 힘을 모아 이산화탄소를 제로(0)로!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시하여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상태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넷 제로(net zero)' 혹은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제고(提高)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오며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중국, 2022년 10월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도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등 자원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각종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줄이고 냉난방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일의 지구를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 슬기로운 생활 꿀팁

알아두면 쓸모 많은 유익한 생활정보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슬기로운 생활 꿀팁을 알아보자.

##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는 꿀팁!

집이나 회사, 길거리 등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식물을 마주한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내에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식물을 가족처럼 돌본다는 뜻의 '반려식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애칭 '집사'에서 유래된 '식집사(식물+집사)'와 '식물덕후', '식중독(植中毒)'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식집사뿐만 아니라 시들어가고 있는 식물이 신경 쓰이거나 새로운 식물을 기르고 싶은 초보자들까지, 식물들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식물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 식물도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식물은 종류별로 양지, 반양지, 반그늘 등 필요로 하는 일조량에 차이가 있다. 식물 별로 필요한 햇빛의 양을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면 식물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이 제대로 자라는 데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뿌리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특히 식물을 새로 산 경우라면 식물이 자라날 것을 예상하여 큰 화분이나 용기 등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 물은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한다!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게 되면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특히 식물을 기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주면 더 잘 자랄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흠에 2.5cm 정도 손가락을 넣어보자. 흠이 살짝 말랐을 때, 화분의 배수구로 물이 빠질 만큼 넉넉하지만 흘러넘치지 않는 만큼 물을 주면 된다. 또한 물이 고이면 뿌리가 습해져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화분에 물이 잘 빠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식물에게 적절한 양분을 제공하자!

야생화의 경우에는 척박한 환경이 성장에 좋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비료나 퇴비 등이 제공될 때 더욱 잘 자란다.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한 퇴비는 식물 성장에 이롭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나 달걀 껍질은 식물을 기를 때 영양분을 제공해 성장을 돕는다. 또한 달걀 껍질은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해서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 하루 5분 건강음식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만큼 매일 섭취하는 음식도 중요하다. 체내에서 필요한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음식을 살펴보자.

# 붉은색 건강 한 잔 레드 와인

### 인류 최초의 술 그리고 레드 와인

포도 껍질에 존재하는 야생 효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와인의 역사는 기원전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와인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를 명확하게 문헌 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포도를 수확하여 저장하는 동안 발효된 포도주스 즉 와인인 인류 최초의 술로 여겨진다.

와인은 색에 따라 레드 와인(red wine), 화이트 와인(white wine), 로제 와인(rose wine) 등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레드 와인은 2002년 미국 <타임>지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만큼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많다.

적포도의 과피와 종자를 함께 발효시켜 만드는 레드 와인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 색소가 술에 녹아들어 붉은 빛을 띤다. 발효 중에 과피와 종자에 함유된 탄닌(tannin)으로 인해 떫은 맛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폴리페놀

하루 1~2잔의 와인 섭취는 심장 보호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육류, 치즈, 버터 등 고지방 음식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레드 와인을 즐기는 식습관 때문에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에서 유래된 ‘프렌치 페러독스(French Paradox)’라는 말도 있다.

이는 레드 와인의 폴리페놀 때문인데, 레드 와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을 체내에 증가시키는 폴리페놀 물질이 화이트 와인보다 10배 이상 들어있다. 폴리페놀은 심장질환, 뇌 질환,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내리고 긴장감을 없애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레드 와인의 폴리페놀이 혈관의 산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프렌치 페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레드 와인을 저장하는 중에 만들어지는 ‘카테킨’은 항산화작용에 뛰어나고, 레드 와인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의 구성요소인 프로시아닌(Procyanidin)은 천연 항산화 작용, 심혈관질환 예방 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 하루 5분 건강습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 몸이 아프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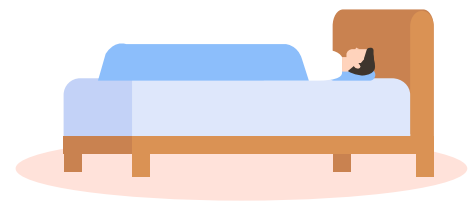


## 하루에 20분 이상 따사로운 햇볕을 쬐자

매일 20분 이상 직접 햇볕을 쬐면 필수영양소인 비타민 D가 합성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실내 유리를 투과한 햇볕은 비타민 D의 합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몸에 활력이 들고 피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 잠들기 전에 빛을 피하면 숙면에 이롭다

잠들기 전 빛에 노출되면 시신경을 자극해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것 역시 잠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고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 전자기기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밝기를 어둡게 조절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등의 기능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반대로 낮 시간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숙면에 이롭다.



##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자

다수의 학자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한다. 차가운 물은 체내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며, 적절한 온도의 물로 변환하는 데에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수분의 일부를 잃게 된다. 또한 차가운 물은 신체 전반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소화도 둔하게 만든다.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리고 체내의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해주는 수분, 오늘부터는 미지근하게 섭취해보자.

##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6시간 이내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주)서진조경 신명희 과장

(주)연동 황인희 과장

(주)일성기업 **천민호** 부사장



코스카레터를 통해 협회 소식과 여러 사업의 추진현황, 법령개정 사항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 발전하는 코스카레터 기대하겠습니다.

지산특수토건(주) **김재용** 이사



매번 전문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는 부산지역의 입찰, 착공정보,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률개정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여줘서 협회에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Q**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고충 해결 및 의견수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완료하여 2023년 1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회원사가 알아야 할 공지사항, 회원사의 고충 해결을 위한 신문고, 협회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소통채널, 국회 입법활동과 대정부 건의시 활용할 설문참여 등이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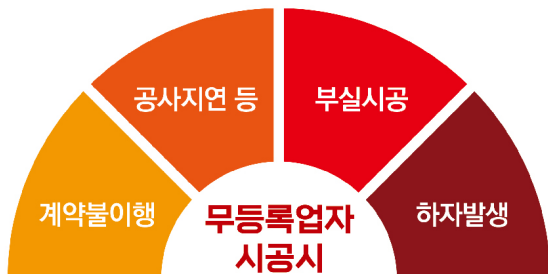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2023. 5. 31 (수)까지)** 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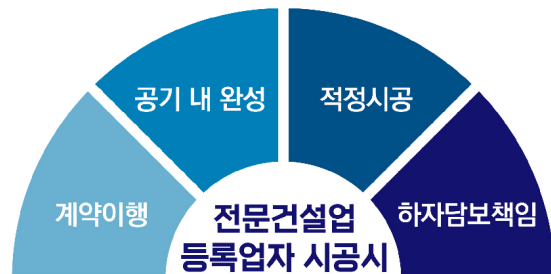
## ※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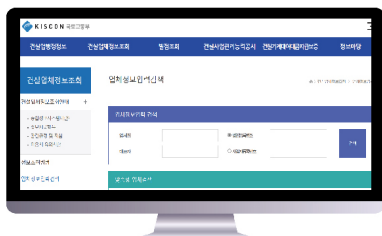


-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 Q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② '키스콘'으로 앱 검색
- ③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 ④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http://www.kosca21.or.kr)